

**LRS HVAC 응축수 설계변경
관통구 신설 공사 적격심사기준**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2026. 03



적격심사기준

제정일자 : 2026. 03. XX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LRS HVAC 응축수 설 계변경 관통구 신설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종합 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의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영상태 평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3. 경영상태 평가(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평가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제3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4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 (경영상태 평가)

-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재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6조 (제출서류 등)

-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7조 (심사방법)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6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본 공사는 해외 건설공사이므로 영세율 적용)

-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 또는 웹메시지로 통보한다.
- ⑥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 ⑦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재심사)

- ①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 2]에 의함)	15	주1)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주2)
	신인도 【 -13 ~ +12 】	1. 일반신인도	-4 ~ +6	주3)
		2. 건설안전신인도	-9 ~ +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3 】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주4)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70	주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6)
합 계			100	

주1)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공사별 시공경험 심사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1-1)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가.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주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2-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2-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 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5항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2-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 면허 및 등록은 당해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함

주3) 신인도 평가

1. 신인도 세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주4)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1. 평가항목 :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2.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가. '22. 1. 1부터 발생한 산업재해에 적용

나.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다.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 (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라. 적용방법 : 누계 별점에 따른 감점 시행

마.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별점관리 시스템의 별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바.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와 은폐, 보고지연·누락 등에 따른 위약벌 가중기준은 계약 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3. 감점규모

누계 별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0.5점이상 1점미만	-0.2	별점 적용 2년 경과 후 소멸
1점이상 2점미만	-0.8	
2점이상 4점미만	-1.2	
4점이상 6점미만	-1.6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5) 입찰가격 평가산식

$$\text{가. 평점(점)} = 70 - 4 \times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 | 는 절대값 표시임

다.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마.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가. 시공경험(15점)

-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text{평점} = \left(\frac{\text{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text{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right) \times 15(\text{점})$$

[주]

1.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서류에 한하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부가가치세 영세율) :
₩ _____ 원
4.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나. 경영상태 (15점) :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분 류 기 준	평 가 등 급	배 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times 100 (\%)$ 【 7 】	○ 기준치 × 0.5 미만	7.0
	○ 기준치 × 0.5 이상 ~ 기준치 × 0.75 미만	6.2
	○ 기준치 × 0.75 이상 ~ 기준치 × 1.0 미만	5.4
	○ 기준치 × 1.0 이상 ~ 기준치 × 1.25 미만	4.6
	○ 기준치 × 1.25 이상	3.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 7 】	○ 기준치 × 1.5 이상	7.0
	○ 기준치 × 1.2 이상 ~ 기준치 × 1.5 미만	6.2
	○ 기준치 × 1.0 이상 ~ 기준치 × 1.2 미만	5.4
	○ 기준치 × 0.7 이상 ~ 기준치 × 1.0 미만	4.6
	○ 기준치 × 0.7 미만	3.8
③ 영업기간	○ 3년 이상	1.0
	○ 3년 미만 1년 이상	0.9
	○ 1년 미만	0.8

○ 기준치(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부채비율	유동비율
()%	()%

○ 기준치(종합건설업)

부채비율	유동비율
()%	()%

[주]

1. 제출서류 : 관련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하 평가시 제5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신인도

(1) 일반신인도(-4점 ~ +6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건설 재해 및 제제 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 창출 실적	3) 일자리 창출실적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5점 ~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중대 재해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5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2.0 -3.5 -5.0
나. 재해 예방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을 받은 자	+1	A. KOSHA-MS B. ISO-45001	+1.0 +0.8

[주]

- 1)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4)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해당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해당 사실 발생일로 본다.
- 5)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 6) 일반신인도 ‘가’목과 건설안전신인도 ‘가’목 및 ‘나’목에 관한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7) 일반신인도 ‘가’목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 7-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 7-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7-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 8) 일반신인도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 9) 일반신인도 ‘나’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 9-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9-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9-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같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9-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9-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9-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9-7)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0) 건설안전신인도 ‘가’목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 11) 건설안전신인도 ‘나’목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 12) 건설안전신인도 ‘다’목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

하여 인정한다.

1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지서식 3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사 LRS HVAC 응축수 설계변경 관통구 신설 공사 제10조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사 동 기준에 따라 조치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서식 2)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업면허증, 입찰참가자격요건 사본
 3. 관련협회 발급 시공실적증명서
 4. 경영상태 관련 증빙서류
 5. 신인도 및 건설안전 관련 증빙서류
 6. 입찰금액산출내역서(필요시, 내역입찰외는 심사대상자에게 공내역서 제공함)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8. 기타 필요서류

한국전력공사(주) 사장 귀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공고번호	
입찰일시	
공 사 명	
공사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 입찰자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인)
공사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 담당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위:)
전화번호	(FAX)
E-mail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경영상태 (체크) <input type="checkbox"/> 재무비율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일반			
		건설안전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감점				
입찰가격 평가					
합 계		100			
총 평 점		100			

